

광섬유 케이블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57655 (2026.01.23.)
- 쟁 점 사 항: 제301조 및 한-미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한국
- 최종 원산지: 제301조 적용 원산지: 일본 / 한-미 FTA 적용 원산지: 한국



II 사실관계

용도	• 통신 네트워크용	
재료	 일본	• 프리폼
	 한국	• 구리 선 • 보호층 및 외피
	기타 국가	• 아라미드 안(yarn)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일본  광학 프리폼 생산 Manufacturing ▾  한국  STEP 1 일본산 프리폼 수입 STEP 2 인발 및 압출 공정 수행 STEP 3 보호층 피복 STEP 4 구리 선 추가 STEP 5 외피 삽입 후 포장 Export ▾  한국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일본	• 유리 원재료를 통해 광학 프리폼 생산
	 한국	• 프리폼에 대해 인발 및 압출 공정 수행 • 아라미드 안 및 기타 보호층 피복 • 구리 선 추가 • 외피 삽입 후 포장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① -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은 광학 프리폼(preform)으로, 한국에서 프리폼을 인발, 압출하는 등의 공정은 프리폼의 굴절률, 코어 및 클래딩 구조, 화학 조성과의 핵심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음

- ⊙ 한국에서의 공정은 프리폼을 단순히 극도로 얇은 광섬유로 축소하여 물리적 특성만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프리폼이 만들어진 일본임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

《CBP의 판정 ② - 한-미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 광섬유 케이블은 제8544.70호로 분류되며, 한-미 FTA에 따른 제8544.7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검토 결과,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8544.70호의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

→ 한-미 FTA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

IV 시사점

- ⊙ CBP는 광섬유 케이블과 관련하여 유리 입자 등의 원재료를 프리폼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광섬유 케이블의 본질적 특성이 형성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후 프리폼을 인발하거나 외피를 입히는 등의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광섬유 케이블
사례번호	NY N347034 (2025.04.07.)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미국] - 유리 원재료를 용융, 연마, 폴리머 코팅 등 하여 광섬유 프리폼 생산 • [중국] - 광섬유 프리폼 절단, 착색, 피복, 커넥터 추가, 시험, 포장 등의 공정 수행
판정 결과	• 미국에서 제조된 프리폼이 완성 케이블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며,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이를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임

유의사항 :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